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03. 1. .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2.11.8)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나. 2002년 11월11일, 11월12일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와 2003년 1월14일, 1월16일, 1월20일 간사회의 결과 허태열 위원, 천정배 위원, 이경재 위원, 임인배 위원, 김용학 위원, 김택기 위원, 김근태 위원, 송영길 위원의 서면동의로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3.1.20)는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 후보자와 다른 법률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한 공직후보자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절차를 규정하고,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 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외한다)이”로 하고, 동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중 “위원회”를 각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하며, 동조제6항중 “위원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의결될 때까지”를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심사”를 “심사 또는 인사청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위원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심사는 국회법 제65조의2의”를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요청사유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동의를”을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로, “임명권자”를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를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심사를”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10일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국가정보원장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등을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정보원장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9조제2항중 “심사경과보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임명동의안등에”를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외한다)에”로, “심사를”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심사경과보고서)”를 “(경과보고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심사경과”를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중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로 본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②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쳤으나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 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중 “심사하게”를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심사를”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공직후보자의 정의) 이 법에서 “공직후보자”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중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에 임명동의요청된 자 또는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 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① 위원회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는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게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게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생략)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요청사유서-----

1. ~ 5. (현행과 같음)

②-----동의 또는 인사청문을-----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 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
이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
고하도록 한다. -----
-----.

②-----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국가정보원장·국세
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하 “국가정보원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10일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에 국가정보원장등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
가정보원장등을 임명할 수 있다.

<p>제11조(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p>	<p>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또는 인사청문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②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쳤으나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② (생략) <신 설></p>	<p>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신 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생략)
②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

③ (생략)
제18조(주의의무) ① (생략)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주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